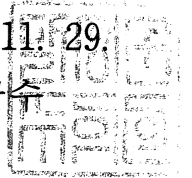


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82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19. 11. 29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「달성군 재무회계 규칙」(규칙 제1441호, 일부개정 2018.12.31.)에 의거 회계
관계공무원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적용하여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규정 중 관련 명칭 변경(안 제5조)
 - 명 칭 : “경리관” → “재무관”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달성군 재무회계 규칙」 제4조(※ 붙임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기타
 - 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 - (2) 입법예고(2019. 10. 16. ~ 11. 5.)결과 : 의견 없음
 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 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 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경리관,”을 “재무관.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) 지방 재정법중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, 징수관에 관한 규정 은 기금담당관에게, 지출원과 출납 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.	제5조(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)----- ----- -----재무관 · ----- ----- ----- -----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

□ 「달성군 재무회계 규칙」 (규칙 제1441호, 일부개정 2018. 12. 31.)

제4조(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) 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,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. <개정 2017.9.11., 2018. 12. 31.>

별표 1 (신설 2018. 12. 31.)

관 직 명	본 청	지방의회	제1관서
회 계 책 임 관	회계업무담당국장	—	—
징 수 관	세입업무담당국장	<u>의회사무국장</u>	관서의 장
분 입 징 수 관	세입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·과장	—	<u>세입업무담당과장</u>
재 무 관	회계업무담당국장	<u>의회사무국장</u>	관서의 장
분 입 재 무 관	회계업무담당과장, 각 실·과장 (해당 재무관 또는 분입재무관이 지정한 일상경비만 해당함)	—	회계업무담당과장
총 괄 채 권 관 리 관	세입업무담당국장	—	—
채 권 관 리 관	소관 실·과장	<u>의회사무국장</u>	관서의 장
총 괄 부 채 관 리 관	예산업무담당실(과)장	—	—
부 채 관 리 관	소관 실·과장	<u>의회사무국장</u>	관서의 장
기 금 총 괄 관 리 관	예산업무담당실(과)장	—	—
통 합 지 출 관	회계업무담당과장	—	—
지 출 원	<u>지출업무담당</u>	<u>지출업무담당</u>	지출업무담당
수 입 금 출 납 원	<u>세입업무담당</u>	—	세입업무담당
일 상 경 비 출 납 원	각 실·과 서무업무담당	—	각 실·과 서무업무담당
세 입 세 출 납 외 원	<u>지출업무담당자</u>	<u>지출업무담당자</u>	<u>지출업무담당자</u>
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하여야 한다.			

관 직 명	기타관서·임시관서	읍·면·동	읍·면의 출장소 (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)
회 계 책 입 관	—	—	—
징 수 관	관서의 장	<u>읍·면장</u>	—
분 입 징 수 관	—	—	—
재 무 관	—	<u>읍·면장</u>	—
분 입 재 무 관	관서의 장·임시관서의 장	—	<u>소장</u>
총 팔 채 권 관 리 관	—	—	—
채 권 관 리 관	관서의 장	<u>읍·면장</u>	—
총 팔 부 채 관 리 관	—	—	—
부 채 관 리 관	—	—	—
기 금 총 팔 관 리 관	—	—	—
통 합 지 출 관	—	—	—
지 출 원	—	<u>지출업무담당 (과장 직제가 있는 읍은 회계업무담당과장)</u>	—
수 입 금 출 납 원	서무담당과장,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	세입업무담당	—
일 상 경 비 출 납 원	서무담당과장,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 업무담당(자)	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(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)	<u>재무업무담당</u>
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	서무업무담당	<u>지출업무담당자</u>	<u>총무업무담당</u>
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			

- 비고 1. 00업무담당 : 팀·계장 등의 6급 이상
2. 00업무담당자 :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
3. 지 출 원 :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, 재무·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